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62
----------	------

2016. 12. 2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12월 2일, 이창섭 의원 대표발의(찬성자 9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12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7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12.2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이창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시민의 참여와 의견청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일부 표기상 오류가 있는 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조성 정책 및 기본계획수립에 시민의 참여와 의견청취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표기상 오류를 수정하는 조례 개정을 제안함

나. 주요내용

- “시민”이 서울특별시민의 약어임을 표시하여 표기오류를 수정함(안 제3조제3호)
-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책무를 가짐(안 제4조제3항)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안 제5조제4항)
- “서업”으로 잘못 표기된 사항을 “사업”으로 수정함(안 제7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다. 기 타 :

### 4.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과 지침성격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와 유도를 독려함으로써 디자인 기준과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대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도시디자인 조례 상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공청회 후 주민공람절차 없이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만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안 제5조제4항 신설규정에 따른 시민 의견 청취가능여부에 논란이 예상될 수 있으나,  
 안 제5조제4항 규정은 의견수렴 방법으로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의 수단을 재량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혼선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공청회 및 주민공람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공람을 통한 시민의견 청취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자구정정 사항반영

- 제4조제2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함
- 안 제4조제3항 중 “정책”을 “시책”으로 하고,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를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시민”을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업”을 “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u>시민</u>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p> <p>4. (생 략)</p> <p>제4조(시장의 책무)</p> <p>① (생 략)</p> <p>② <u>시는</u> 공공기관, 자치구 및 기업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 ③ (생 략)</p>	<p>제3조(기본방향)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u>-----.</p> <p>4. (현행과 같음)</p> <p>제4조(시장의 책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u> ----- ----- ----- -----.</p> <p>③ <u>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7조(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u>사업</u>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u>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p> <p>제7조(적용범위) ① ----- ----- <u>사업</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